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25

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득구·기동민

김교흥 · 김민석 · 김주영

신정훈 · 안규백 · 이명수

최인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%에 불과한 수도권에 50.1%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,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·금융·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1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3항 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61조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제61조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 ①·② (생 략) 과세특례) ① · ② (현행과 같 유)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(3) ----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 년 12월 31일-----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 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

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	
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	
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	
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	
입하여야 한다.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